

기 술 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

2020. . .

1. 개정이유

현 기술사 교육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현 실정과 맞지 않는 기술사
교육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희망하는 기관의 신규 진입
장벽을 낮추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술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완화(안 제5조제2항)

- 1) 전담강사 배치기준 삭제(안 제5조제2항제2호)
- 2) 영업면적 규제 삭제(안 제5조제2항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기술사법 및 동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합의 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사전규제심사 결과 : 비규제

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 호

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교육기관의 요건 등) ① (생략)	제5조(교육기관의 요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영 제14조제1항에서 “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교육훈련 관련 전담 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</u>	<삭 제>
3. <u>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갖출 것</u>	<삭 제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